

議案番號	第 號
報告	2015. 11. 18.
年月日	(第 21 次)

報告事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任 鍾 龍
提出	日年月	月日	2015. 11. 18.

1. 의결주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제안이유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간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 1천억원 이상에서 연간 매출액 십억원 초과로 확대하고자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안 제3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 여신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다양한 운용자가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형가맹점의 범위 확대 (안 제6조의14제1항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범위를 현행연간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 1천억원 이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감독원의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 모집인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4조제1항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 모집인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 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의14제1항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매출액이 10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고, 제3항 중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 및 제14조의3"을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4조의4"를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및 제27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

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 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 5. (생략)

<신 설>

6. ~ 8. (생략) ② (생략)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직 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개 정 안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 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 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u>매출액이 10</u> 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 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

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점을 말한다. 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 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 드등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 4조의3제3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8조제2호 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 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 조의2, 제10조 및 제14조의3에

- ② (현행과 같음)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

----- 제10조, 제14조의3,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 무

- 2. <u>법 제14조의4</u>, 제57조 및 제5 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 3. ~ 7. (생략)
- ② (생략)
-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생략)

<신 설>

2. ~ 4. (생 략)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
2. <u>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및</u>
<u>제27조의3,</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의2. 법 제16조의3 및 제16조
의4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취
소 등에 관한 사무

2. ~ 4. (현행과 같음)